최신 시행 법령

1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2. 10. 18.] [고용노동부령 제367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(1)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 **(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4까지 신설)**

(2)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함 **(제221조의5 신설)**

(3)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와 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**(제628조의2 신설)**

(4)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 **(별표 12)**

2. 전기사업법

[시행 2022. 10. 18.] [법률 제19003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현행법은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, 그 최대 발전설비용량을 30만킬로와트에서 50만킬로와트로 상향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 **(제92조의2제1항)**

* 집단에너지: "집단에너지"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함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)

** 사업자: "사업자"란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9조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)

최신 시행 법령

3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[시행 2022. 10. 18.] [법률 제19020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제조업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2007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2022년 8월 2일로 일몰이 종료되었음.

최근 창업기업 숫자가 줄어드는 제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,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하여 2022년 8월 3일부터 2027년 8월 2일까지 종전과 같은 16개 부담금을 면제 **(제23조제4항 신설, 부칙 제2조 및 제3조)**

4. 관광진흥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 10. 17.] [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2호, 2022. 10. 17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축물이 3층 이하인 경우에만 관광펜션업 지정을 하던 것을 4층 이하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**(별표 2 제8호가목)**

최신 시행 법령

5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2. 10. 15.] [대통령령 제32061호, 2021. 10. 14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(1)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 추가 **(제13조)**

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・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,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기준을 반영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함.

(2)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 개선 **(제19조)**

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유해성, 용도 및 노출정보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 허가물질의 지정 시 화학물질의 제조・수입・사용자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함.

* 허가물질: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・수입・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물질

6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0. 20.] [대통령령 제32813호, 2022. 7. 19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,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**(별표 1,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).**

최신 시행 법령

7.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2. 10. 20.] [대통령령 제32810호, 2022. 7. 19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종전에는 존치시설의 가치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존치시설부담금을 산정하던 것을, 앞으로는 존치시설의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존치시설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**(제34조제5항 및 제6항, 별표 1의2 신설).**

8.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2. 10. 20.] [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9호, 2022. 10. 20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액비(液肥)에 관한 처리 기술의 발달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액비에 포함되는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이 0.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함 **(제3조 단서 삭제).**